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정 2022.09.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권의 보호와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본교 인권·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2. “침해행위”라 함은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유발행위 등 제1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대학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습, 연구, 대학생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한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2차 피해 유발행위”라 함은 당해 사건을 인지한 자가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7. “사건관련자”라 함은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8. “신고인”이라 함은 침해행위를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해자”라 함은 침해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침해행위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신고인”이라 함은 침해행위를 행한 것으로 지목되어 센터에 신고된 사람 또는 신고이외의 경로로 침해행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11. “참고인”이라 함은 목격자 등 신고사건에 관하여 경험,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2.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인을 말한다.
13. “행위자”라 함은 피신고인 중에서 이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침해행위의 혐의가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독립성 등) 센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장된다.

제4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 ② 침해행위로 신고 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관하여 사건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5조(구성원의 의무)

- ① 본교 구성원은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
- ② 본교 구성원은 서로에 대하여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③ 본교 구성원은 타인에 대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묵인하거나 부적절하게 개입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해서도 아니된다.

제2장 센터의 조직과 업무

제6조(구성)

- ① 본교에 사건의 피해 관련 상담 및 조사, 피해자 지원 및 구제,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센터를 둔다.
- ②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인권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센터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각각 지정해야 한다.
- ⑤ 센터의 제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 ⑥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고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권·성평등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조사 및 피해자 지원 및 구제
 - 가. 침해행위관련 상담·조사 및 정보제공
 - 나.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등 기타 개인상담 및 관련 정보제공
 - 다. 사건조사팀의 운영
 - 라. 피해자 지원 및 구제
 - 마. 기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업무
2. 교육
 - 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과 본교 구성원의 인권과 성평등 의식 증진,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 나. 괴롭힘 행위의 예방을 위한 교육
 - 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
 - 라.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기타

- 가. 인권·성평등 관련 제도·규정 개선을 위한 업무
- 나. 그 밖에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장 사건의 조사와 처리 등

제8조(사건의 신고와 접수)

- ①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신고인,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③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센터장 또는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사건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 ⑤ 피해자가 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조정을 요청할 경우, 센터장 또는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원은 일차적으로 조정을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다.
- ⑥ 센터장은 사안에 따라 사건조사팀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 ⑦ 센터는 조정을 통해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9조(직권조사)

- ① 센터가 제8조 제1항 외의 다른 경로로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처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해서는 제11조 제3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0조(사건관련자 보호의 원칙과 권리보장)

- ① 사건당사자는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대리인(당사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②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신고사건의 조사와 처리)

- ① 센터는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를 위하여 피신고인에게 조사개시를 고지하고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사건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상담과 조사의 분리)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상담과 조사를 분리하여 진행하며 각기 다른 직원이 담당하도록 한다.

제13조(조사 방법)

-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사건관련자는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사건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사건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사건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의 각하)

-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신고를 철회한 후 동일한 사안을 다시 신고한 경우
 4. 인권·성평등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센터장은 신고가 각하된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의 기각)

- ① 인권·성평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 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신고가 기각된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조치 및 징계요구 등

제16조(조치)

- ① 센터장은 인권·성평등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사건당사자의 분리조치와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
 2. 피신고인의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3. 피신고인의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명령
 4.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명령
 5. 그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 ② 센터장은 사건처리 종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형사고발) 센터장은 신고 된 침해 행위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자신의 결정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사건조사팀의 의견을 들어서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8조(징계의 요구)

- ① 센터장은 인권·성평등위원회의 심의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를

요청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과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기구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피신고인이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또는 기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피신고인이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인권·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 하거나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한 징계 또는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이 재범일 경우
2. 피신고인이 인권·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센터의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피신고인이 신고인,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4.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인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 참고인, 신고인 등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 등 추가적인 피해를 끼쳐 2차 피해를 유발 하였을 경우
5.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대리인 또는 주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종용한 경우

제5장 불이익 금지 등

제20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관련자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소송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위해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기타) 인권·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권·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3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훈련의 지원 등) 센터는 직원이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25조(규정 제정·개정) 이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관리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부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운영규정」(2020. 04. 13. 제정)은 폐지한다.